

# 2020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0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 목차

---

<b>I</b>	<b>사회적가치 측정 개요</b>	<b>5</b>
	1. 사회적 가치란	7
	2. 지표구성	9
	3. 역할 및 측정절차	12
	4. 기타	13
<b>II</b>	<b>참여기업 매뉴얼</b>	<b>15</b>
	1. 총괄표	17
	2. 지표별 작성 방법	18
<b>III</b>	<b>작성 서식 및 참고예시</b>	<b>47</b>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49
	2. 증빙자료 참고예시[기업용]	63
<b>부록</b>	<b>측정기준표</b>	<b>71</b>



# 1

## 사회적가치 측정 개요

---

- 01 사회적 가치란
- 02 지표구성
- 03 역할 및 측정절차
- 04 기타





## 1 사회적가치란?

### □ 사회적가치

-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가치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 정부 및 정책동향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영역의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보고,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실현을 강조(특히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영역)

- \* 국정과제 8(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2(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26(사회적경제 활성화)

###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본 지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가치 수준을 파악하여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확인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 함
-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청취로 개선·보완 추진

#### ※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관련 동향

- 사회적가치 측정은 성과측정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통일되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사회성과 투자수익률(SROI), 사회영향 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IRIS), 글로벌 사회성과투자 평가시스템(GIIRS), 균형 성과지표(BSC)를 이용한 성과측정 도구 등이 연구되고 있음

## □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개별기업 피드백을 통한 가치창출 제고 및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기관과의 사업연계를 지원
-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가치 측정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 종합적인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 모두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
-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표 내 ‘경제적 성과’ 관점을 제외한 ‘사회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만을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

## □ 대상 및 내용

- 대상: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측정내용
  - ‘사회적 성과’ 관점은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평가
    -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평가
  - ‘경제적 성과’ 관점은 기업의 종합적인 재정성과에 대하여 평가
    -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을 평가
  - ‘혁신 성과’ 관점은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평가
    - \*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 평가

### ※ 지표 개선 시 고려한 사항

- (객관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반영을 통해 지표의 수용성을 개선
- (현실성)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해야하고, 실제 활용 및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형평성) 업종·규모 등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
  - \* 본 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개선 추진 예정

## 2 지표 구성

### □ 사회적 가치지표(SVI)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18)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 ※ 지표모형의 특성

- 관점별로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 성과(10%)로 구성
- 계량(65%), 비계량(35%)으로 구성
- 지표가 활용되는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지표의 모듈화)



- 측정모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기준의 속성을 기준으로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지표’의 순차적인 지표 프레임 구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협동조합 원칙 등의 관련 법령 및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표 구성

**※ 지표구성 시 참고 법령 및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교육훈련의 실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민간 및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 재화의 구매·생산·판매·제공, 조합원의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직원 교육훈련 적극적인 수행 등
-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관점:**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가치 등 공통요소의 추출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성

**(사회적 성과 관점)**

- 대내적: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기업 내부운영의 민주성 등
- 대외적: 창출된 수익의 사회적 활용,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조성 노력 등

**(경제적 성과 관점)**

- 대내적으로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등이 포함
- 대외적으로 얼마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지 등이 포함(매출액, 영업이익 등)

**(혁신 성과 관점)**

- 기업 운영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혁신성

**※ 각 관점별 설정근거**

- IRIS(사회영향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의 5대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범주를 구분
  - \* 사회적 성과 :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 \* 경제적 성과 : 재정 성과
  - \* 혁신 성과 : 기업 혁신

○ 각 관점별 측정내용

관 점	주요 측정내용
사회적 성과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경제적 성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혁신 성과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지표의 특성

- 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 지표의 활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②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 비계량지표의 도입으로 계량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정성적·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
  -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충족 요소를 참조하여 비계량 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도모
  - \* 해당지표: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6.사회적 환원 노력도, 14.혁신노력도
- ③ 기업규모 및 업종별 특성 반영: 각 지표별 측정 시, 사회적기업 동일업종의 전체 수치와 비교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준을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로 측정
  - \* 해당지표: 8.근로자 임금수준, 10.고용성과, 11.매출성과, 12. 영업성과, 13. 노동생산성

○ 측정결과의 종합

- 종합점수 등급: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4단계 등급으로 산출

종합점수	등급 정의
<b>탁월</b> 90점 이상	모든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b>우수</b> 80점 이상 90점 미만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b>보통</b> 70점 이상 80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b>미흡</b> 70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하여 개선을 위한 변화시도가 필요한 수준

### 3 역할 및 측정절차

#### □ 주체별 역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지원
  - 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사회적 가치측정
  - 사회적 가치측정 평가단 구성·운영,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사회적 가치측정 결과DB 구축 및 분석
  - 사회적 가치지표 정교화 및 개선·보완 작업
- 측정기관(권역별 지원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
  - 사회적 가치지표 교육(참여기업 대상)
  - 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사회적 가치측정(측정결과 진흥원 공유)
- 참여기업
  - 지표 활용 지원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측정 모집공고 참여 신청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측정기관 제출
  - 사회적 가치측정 측정기관(또는 진흥원) 현장실사 응대
  - 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현장실사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 □ 측정 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 용
①	매뉴얼 제작·배포	진흥원	• 활용매뉴얼 제작 및 측정기관 등 배포·교육
②	지표 교육 및 안내	진흥원, 측정기관	• 지표 측정방법 등 교육(진흥원→측정기관, 기업) •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측정기관→기업)
③	신청서 작성·제출 및 현장실사 준비	참여기업	• SVI가 활용된 외부기관의 지원사업(또는 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 사업)등에 참여 신청 • 사회적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재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구비 등 현장실사 준비
④	사회적 가치측정 (현장실사)	측정기관 (or진흥원)	• 기업이 작성하고 제출한 신청서 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준비(기업 면담일정 조율 등) • 참여기업 현장실사(증빙자료 확인)를 통한 신청서 내용 확인 및 사회적가치 측정 실시
⑤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측정기관 (or진흥원)	• (측정기관) 현장실사 후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흥원) 측정기관이 제출한 측정 결과보고서 검토
⑥	평가단 운영	진흥원	• 내·외부 전문평가위원 구성(현장·학계 등 전문가) • 평가단에 의한 측정결과보고서 최종평가 및 점수 확정



## 4 기타

---

### □ 기타사항

- 사회적가치지표의 내용 및 측정방법, 절차 등은 매년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현실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추진
- 부록 ‘업종별 측정기준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
- 개선·보완된 최신 활용매뉴얼 자료는 매년 버전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공
- 자발적인 사회적 가치측정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자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SE 자가진단 KIT’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공
- 본 지표 및 매뉴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과 사전협의 이후에 사용가능 (담당부서: 인증평가팀(031-697-7720, 7724))



# 2

## 참여기업 매뉴얼

---

01 총괄표

02 지표별 작성방법





## 제2장

## 참여기업 매뉴얼

### 1 총괄표

관 점	범 주	영역	측정 지표	배 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사회목적 재투자 (10)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근로자 지향성 (13)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노동성과 (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0)	13. 노동생산성	5	
			14. 혁신노력도	10	
계		14개 지표		100	

※ 작성 기준시점: 2019년도 기업의 활동 및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증빙必)

\* 지표14번(혁신노력도)만 최근 2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 지표별 작성방법

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배점 : 2점
------	--------------	---------

### 지표정의

○ 기업이 명시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지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 가치(목적)를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기업미션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협력기관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미션을 이해시키고 보다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미션·비전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및 수혜대상 등이 포함되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미 션					
비 전					
추진전략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관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복체크 가능)</p>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① 미션 :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② 비전 : 기업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중, 장기적으로 세운 목표를 의미  
 ③ 추진전략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수행전략을 의미  
 ④ 사회적 가치 명시자료 : 사회적 가치가 내포된 미션 및 비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서를 뜻하며, 정관(목적) 또는 미션선언문, 비전선언문 등이 해당

## 작성사례

미션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전	2020년 내에 간병 및 요양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 근로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추진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병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li>2. 취약계층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추진</li> <li>3.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li> </ol>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table border="1"> <tr> <td>정관 <input type="checkbox"/></td> <td>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 <td>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 <td>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p>*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복체크 가능)</p>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 참고서식: [제3장] 1번 미션선언문 및 2번 비전선언문 참조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정관(사회적 목적)
- 미션선언문 · 비전선언문
- 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미션 · 비전이 명시된 자체적인 문서 또는 홈페이지

**지표정의**

○ 기업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듯 사회적 가치(성과)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참여를 촉진시킵니다.

**작성방법**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는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내용으로 기준(목표), 담당인력(담당자), 성과보고서(활동내용), 평가위원회(평가), 사내공유(확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단요소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요약)
측정 기준	유 / 무	
담당 인력	유 / 무	
성과보고서	유 / 무	
평가위원회	유 / 무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 무	

※ 판단요소별 기준 및 내용

측정기준	사회적 성과목표 및 등급기준 설정유무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기준을 설정하여 기재
담당인력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 유무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인력이 있고, 업무분장표 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성과 보고서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내용	측정기준(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내역 및 해당 목표지표의 등급결과를 기재
평가 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평가위원 위촉내역과 평가의견 기재
평가결과 사내공유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무	인트라넷, 메일공지 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의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공유내역 기재

○ 판단요소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기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업종 또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표 및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담당인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측정·보고하는 담당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과보고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역과 달성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평가위원회:** 기업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는 조직의 구성 유·무로 판단하며 평가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으나, 내부인사(이사 및 직원 등) 외에 외부인사도 포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 **평가결과 사내공유:** 기업 사회적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평가결과를 내부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사례**

판단요소	구축여부	근거
측정기준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목표 및 등급설정
담당인력	유	업무분장표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자 및 해당업무 명시)
성과보고서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및 등급결과 기재함
평가위원회	유	평가위원 위촉(내부3인 외부1인) 및 평가의견·서명 확인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인트라넷(메일)을 통한 전체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

※ 참고서식: [제3장] 3번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및 4번 위촉장 참조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2019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 \* 기업 자체양식 활용이 가능하나, 1)사회적성과 목표, 2)등급 기준, 3)추진활동·내용, 4)등급결과, 5)담당자(업무분장표) 등 필수포함(상기 확인불가 시 해당항목 불인정)
- 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제3장] 양식 참조)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판단요소	증빙자료 인정 범위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대상연도(2019년)의 사업계획서·결과보고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기준 기재 유무</li> <li>•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등급 기재</li> <li>•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 관리 관련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등</li> </ul>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 명시 유무</li> <li>• 사회적 성과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li> </ul>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 연도(2019년) 사업결과보고 내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유무</li> <li>• 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에 따른 ‘사회적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li> <li>• 기업 자체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자료 등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사회성과인센티브 등)</li> </ul>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li> <li>• 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의 기재 유무(연 1회 이상의 평가실시 내역 확인)</li> <li>• 외부전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li> <li>•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직운영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성과에 대한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가능 할 시 이를 인정</li> </ul>
평가결과 사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한 내·외부인사의 평가까지 수행한 사회적 성과평가결과 등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로의 공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정</li> <li>* 홈페이지 게재, 인트라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li> </ul>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착안사항의 ①번 / ②번은 필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항목만 기재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p>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b></p> <p>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항목만 작성</p> <p>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②번항목만 작성</p> </div> <p>① <b>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19.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li> <li>- (임금) ‘19.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li> </ul> <p>② <b>사회적가치 실현노력(기타):</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내부운영 상 사회적가치 실현수준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 및 기타 추가내용을 기재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li> </ul> <p>③ <b>근로자 보건 및 안전:</b>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자료: 기업차원에서의 직원 대상 무료건강검진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실시내역 유무 등</li> </ul> <p>④ <b>고용의 질:</b>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자료: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활동 사례 등</li> </ul>

판단기준	착안사항										
<b>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b>	①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② (이용자의 사회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③ (기타 사회가치) 상기 항목 외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자유롭게 기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  <div style="text-align: center;">【 기업 작성예시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품 서 비 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품 서 비 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 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 용 자</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제 품 서 비 스	생 산	제 품 서 비 스	판 매	이 용 자		기 타	
	구분	내용(예시)									
	제 품 서 비 스	생 산									
	제 품 서 비 스	판 매									
이 용 자											
기 타											
생 산	<i>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i>										
판 매	<i>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i>										
이 용 자	<i>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i>										
기 타	<i>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i>										

###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b>내부운영의 사회 가치</b>	<b>1.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b> ① <b>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b>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2019년 12월말 기준) <i>(예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i> - 취약계층 평균시급(2019년 12월 기준) <i>(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i>

구 분	내 용
	<p>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가치 실현노력</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작성 예시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토록 규정함</li> <li>- 2019년 12월 현재 전문가(자격이수 등)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운영</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작성 예시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서 공연되는 뮤지컬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2019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작성 예시 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li> <li>-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연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div> <p>※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을 형식·내용·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p> <p><b>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b></p> <p>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li> <li>-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li> <li>- (근무환경 개선노력)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사 배치</li> </ul> <p>④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li> <li>-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li> <li>-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li> <li>-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li> </ul>

구 분	내 용
<p>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사용자)의 사회가치</p>	<p><b>작성 예시 4.</b></p> <p>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가치</p> <p>가. 생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구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li> <li>-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li> <li>-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li> <li>-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li> </ul> <p>나. 판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li> <li>-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li> <li>-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 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li> <li>-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li> </ul> <p>다.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발생</li> </ul> <p>라.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li> </ul> <p>※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p>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19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회 간 상호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 수

-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② 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합니다.  
ex)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 업종네트워크 등
-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1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관련 MOU 문건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회 회원사 명단, 협의회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지역사회는 기업의 소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범위를 의미합니다.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협약서), 계약서,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와의 협력 활동은 '지표 4'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p>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 <b>부가적인 일자리 창출:</b> 측정 대상연도(2019년)와 전년도(2018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근로자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8, 19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p> <p>② <b>구성원 성과급:</b>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9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정기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간접지급 내역은 불인정</p> <p>③ <b>교육훈련비:</b>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19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④ <b>시설투자비:</b>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19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 <b>지역사회 재투자:</b>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p> <p>② <b>사회서비스 제공:</b>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p>
<p>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p>	<p>○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p>

## 작성사례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p>① <b>부가적인 일자리 창출</b> - 2018년(12월: 10명 → 2019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p> <p>② <b>구성원 성과급</b>: 19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p> <p>③ <b>교육훈련비</b>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p> <p>④ <b>시설투자비</b>: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p>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8년, 2019년(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9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9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9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9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19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 인사·사외이사 등이 참여하여 내는 의견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별 회의일자 및 참석인원 수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의사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회의 참여인원
합계						

참가비율	
------	--

※ 참가비율 산식: {(근로자 측 인사+사외이사+조합원) / 총 참가인원} X 10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하여 최종비율 산출

- 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합니다.(주주총회 및 직원총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비율로 산출합니다.
- ③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기구: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이사회 등)
  - 구성원: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인사: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근로자 측 인사 수를 기재합니다.
  - 사외이사: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조합원: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합니다.
  - 총 참여인원 :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 ④ 사외이사, 근로자인사(대표), 조합원은 등기부등본 상 등재여부 또는 선출동의서, 위원명부, 조합원 명단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



## 작성사례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회의 참여인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대표이사> ○○○	3.13	1	1	-	5
	<사외이사> ○○○, ○○○	4.17	1	1	-	6
	<근로자 인사> ○○○, ○○○	7.17	1	1	-	5
		10.23	1	1	-	6
합계			4	4	-	22

참가비율	36.4% $\{(4 + 4) \div 22\} \times 100(\%) = 36.3636... \rightarrow 36.4\%$
------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19년 회의록 및 참여자명부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지표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작성합니다.

【 기업 작성예시 】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단위: 원) 산식

= 근로자 총 급여(임금대장 상 지급내역 확인) ÷ 총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기재내역 확인)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산식

= 전체 근로자 수 x 근로자별 일 근무시간 x '19년 12월 근무일 수

\* 참고: 2019년 12월의 근로일 수는 총 21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따라서 주5일 평일 근무자의 12월 근무일수는 21일로 계산

(계산 예시) 전체 근로자 수 총 5명(일8시간 4명/ 일7시간 1명, 모두 주5일 근무)일 경우,  
→ (8시간\*4명\*21일) + (7시간\*1명\*21일) = 819시간

-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2019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 원)
-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2019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 ③ 기업 업종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1' 참고(매출액의 40%이상을 주 업종으로 측정)
- ④ 업종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평균 수준은 [부록] 내 '참고자료 4'를 참고

※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월급 기준: 1,745,150원)

- ⑤ 총 급여는 2019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세전기준의 총 급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⑥ 총 근무시간은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근무시간이 확인가능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작성 사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i>37,239,200 원</i>	<i>3,532 시간</i>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i>10,543 원/시간</i>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 측정대상 시점(2019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2019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19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근무시간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19년 12월) 총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근로자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교육별로 교육 내용 및 수혜자수, 교육 시간을 작성하고 1인당 교육훈련 시간 및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영역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 = B*C/A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 ① 법정의무교육은 기업 의무사항이므로 제외되며, 직무·사업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의 기재는 지양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② 교육과정: 외부전문 강사초빙 및 출장교육 외에도 내부교육도 인정가능(증빙필요)합니다.  
\* 내부: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외부: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 ③ 전체 근로자 수 : 교육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수는 2019년 12월 기준의 전체 유급 근로자 수(대표자는 제외)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④ 학위과정 및 전문자격 이수 외 일반교육의 최대 인정시간은 50시간 내로 제한됩니다.  
※ 각 교육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는 필수이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각 조사항목의 확인이 불가할 시 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사례

교육		전체 근로자 수	교육 수혜자 수	교육 시간	1인당 교육시간
영역	교육과정명	(A)	(B)	(C)	(D) = B*C/A
법정 의무 교육 외	내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명	5명	5H	1.25
	외부 회계교육	20명	3명	5H	0.75
	내부교육(노인성 치매관련)	20명	10명	5H	2.5
	외부 간병서비스 교육	20명	15명	5H	3.75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8.25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가. (공통)

- 2019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총 유급근로자 명부)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등)

나. (선택)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 내부교육 시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제3장]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을 참고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정의

- 조직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18년, 2019년)의 유급근로자 수 및 고용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명, %)

2019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① 2019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2019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19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 ②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b): 2018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18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 ③ 고용성장률: 2018년 고용인원 수 대비 2019년 고용인원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text{고용 성장률} = \frac{('19.12.)\text{총 유급근로자수}(a) - ('18.12.)\text{총 유급근로자수}(b)}{('18.12.)\text{총 유급근로자수}(b)} \times 100\%$$

- \*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④ 유급근로자수는 각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이며, 고용보험내역에 등재인원만 인정됩니다.

##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 ⑤ 측정 대상년도(2019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고용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 로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단위: 명, %)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17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15 명	12 명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25 %	

※ 고용성장률 산출 =  $\{ (15\text{명} - 12\text{명}) \div 12\text{명} \} \times 100 (\%) = 25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9년, 2017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정의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회계 상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매출액성장률을 기준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18년, 2019년)의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

2019년도 매출액 (a)	2018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① 매출액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천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증빙서류: 2018, 2019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매출액)

- ② 매출액 성장률: 2018년 매출액 대비 2019년 매출액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text{매출액 성장률} = \frac{2019\text{년 매출액}(a) - 2018\text{년 매출액}(b)}{2018\text{년 매출액}(b)} \times 100\%$$

\* 매출액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③ 측정 대상년도(2019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매출액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로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단위: 천원, %)

2019년도 매출액 (a)	2018년도 매출액 (b)
512,000 천원	400,000 천원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28.0%	

※ 매출액 성장률 산출 = { (512,000천원 - 400,000천원) ÷ 400,000천원 } X 100 (%) = 28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2019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 작성방법

- 측정 대상연도(2019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영업이익	

- ①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천원 이하는 절사)
- ②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하여 기재  
\* 예시) 영업손실이 총 500,000원 발생한 경우, '- 500' 으로 기재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9년 기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측정

**작성방법**

- 측정 대상연도(2019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명, %)

2019년 총 매출액(a)	2019년 총 유급근로자(b)
노동생산성 (a÷b)	

$$\text{노동생산성 (1인당 매출액)} = \frac{\text{2019년 총 매출액 (a)}}{\text{2019년 총 유급근로자 (b)}}$$

- ① 총 매출액: 2019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재
- ② 총 유급근로자: 2019년 12월 기준의 고용보험내역 상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기재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2019년 기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18년, 2019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 ①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 ②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구분	착안사항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작성사례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p>(사회문제 해결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 및 지체장애인 보장구의 높은 가격에 대비하여 낮은 활용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생산단계를 단축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보장구를 보급</li> </ul> <p>(제도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li> </ul> <p>(사내제안 및 외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li> <li>-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li> </ul> <p>(경영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li> <li>-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li> </ul> <p>(R&amp;D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li> </ul>
혁신의 결과	<p>(사회문제 해결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대상 정기납품 계약체결 및 생산 확대(해외진출 등)</li> </ul> <p>(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li> </ul> <p>(혁신제품 및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li> <li>-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li> <li>- 운송 카드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li> <li>-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기술특허 획득 등</li> </ul>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3

## 작성

### 서식 및 참고예시

---

0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02 증빙자료 참고예시[기업용]



##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 ※ 작성요령

##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0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9년)를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 신청서 첫 번째 장

##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기업용)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i>작성요령1 참조</i>		설립일	<i>작성요령2 참조</i>	
주업종	<i>작성요령3 참조</i>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 번호	<i>작성요령4 참조</i>		인증(지정) 유형	<i>작성요령4 참조</i>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i>작성요령5 참조</i>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i>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i>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p>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대표자</span> <span>(서명)</span> </p>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미션	
----	--

비전	
----	--

추진전략	
------	--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복체크 가능)			

**측정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요약)
측정기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 <input type="checkbo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무 <input type="checkbox"/></div>	
담당인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 <input type="checkbo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무 <input type="checkbox"/></div>	
성과보고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 <input type="checkbo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무 <input type="checkbox"/></div>	
평가위원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 <input type="checkbo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무 <input type="checkbox"/></div>	
평가결과 사내 공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 <input type="checkbo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무 <input type="checkbox"/></div>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b>측정지표</b>	<b>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b>
-------------	-----------------------

의사 결정기 구	전 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회의 참여인원
합계						

참가비율	
------	--



**측정지표****8. 근로자 임금수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측정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교육과정 명	전체 근로자수 [A]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B*C)/A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b>측정지표</b>	<b>10. 고용성과</b>
-------------	-----------------

(단위: 명, %)

2019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b>측정지표</b>	<b>11. 매출성과</b>
-------------	-----------------

(단위: 천원, %)

2019년도 매출액 (a)	2018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b>측정지표</b>	<b>12. 영업성과</b>
-------------	-----------------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영업이익	

측정지표

13. 노동생산성

(단위: 천원, 명)

2019년 총 매출액(a)	2019년 총 유급근로자(b)
노동생산성 (a÷b)	

판단기준	내용(요약)
<p>과정의 혁신</p>	
<p>혁신의 결과</p>	

## 1. 미션선언문

## 미션선언문

기업의 핵심미션(mission)을 한 문장으로 기재

- 필요한 경우 미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
- 
- 

기업명 기재

## ※ 참고자료

## 미션선언문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최고의 가치창조  
We Do Our B · E · S · T !

- Benefit. 도시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 기여
- Efficiency.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윤리경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 Satisfaction. 고객감동실천으로 사랑받는 시민기업
- Technonlogy. 기술축적을 통한 미래창조

주식회사 ○○○○

※ 상기 서식은 참고용이며,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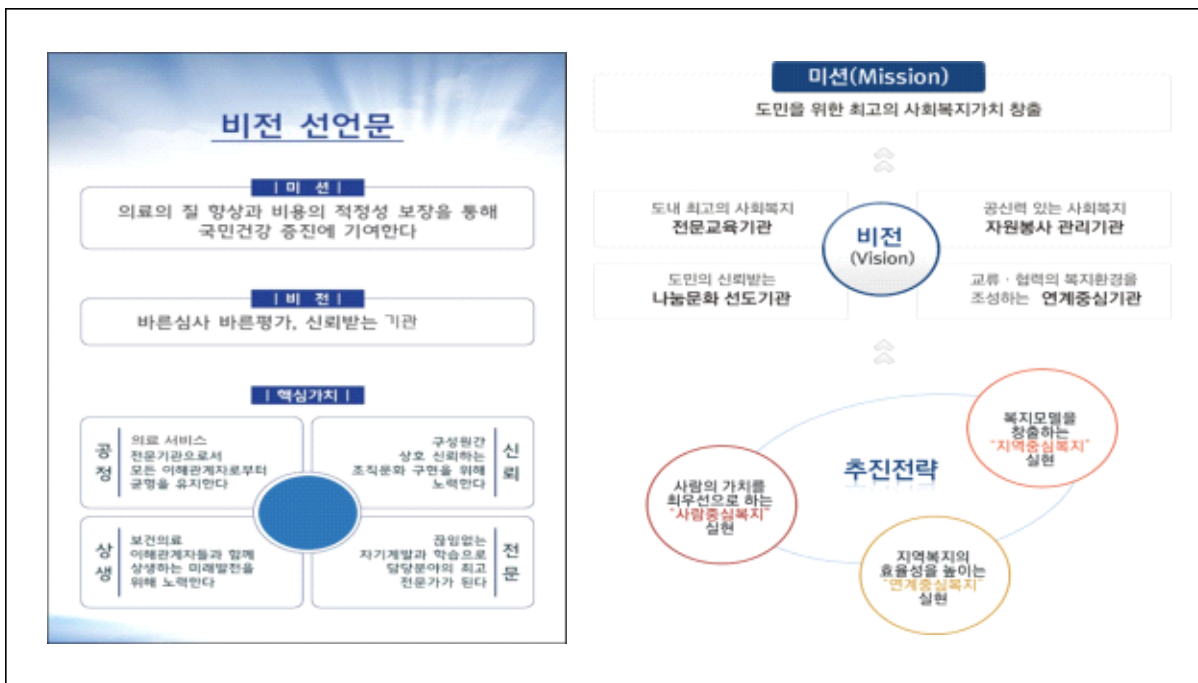
## 2. 비전선언문

비 전 선 언 문

미 선				
비 전				
핵심가치 또는 추진전략				

주식회사 ○○○○

### ※ 참고자료



※ 상기 서식은 참고용이며,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3.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 20 년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

구분	내용						
<b>측정기준</b>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10톤 이상	7톤 이상	4톤 이상	1톤 이상	0톤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취약계층 고용창출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10명 이상	7명 이상	4명 이상	1명 이상	0명
	<i>☞가이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측정년도의 목표와 등급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관리</i>						
	<b>성과보고</b> (사회적성과 활동결과)	지표	세부목표	추진 활동내용 및 실적	결과	등급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지표달성 위해 추진한 활동내용 기재	7.5톤 감축	A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2회 실시	C		
취약계층 고용창출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5명 고용	B		
<i>☞가이드: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추진한 사회적성과 활동내용과 실적을 기재하고 그 결과 및 등급을 자체적으로 평가</i>							



구분	내용																																														
<b>담당자</b> (사회적성과 담당자 유무)	<b>담당자            소속(직책)</b>	<b>담당자명</b>	(서명)																																												
<b>평가위원회</b> (내·외부위원의 위촉 및 평가)	<p>1. 평가위원 명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위원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위원 소속</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길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대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길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대학교 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평가위원회 회의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위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원별 의견</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홍길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홍길순</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b>비고(기타의견)</b></td> </tr> <tr> <td colspan="3" style="height: 5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회의일자</b></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장소</b></td> </tr> </tbody> </table> <p>☞가이드: 기업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활동내용 및 실적(결과)에 대해 내·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피드백을 추진</p>			연번	평가위원 명	평가위원 소속	구분	1	홍길동	근로자대표	사내	2	홍길순	지역대학교 교수	사외	3				4				평가위원	위원별 의견	서명	홍길동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함	(서명)	홍길순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함	(서명)							<b>비고(기타의견)</b>						<b>회의일자</b>		<b>장소</b>
연번	평가위원 명	평가위원 소속	구분																																												
1	홍길동	근로자대표	사내																																												
2	홍길순	지역대학교 교수	사외																																												
3																																															
4																																															
평가위원	위원별 의견	서명																																													
홍길동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함	(서명)																																													
홍길순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함	(서명)																																													
<b>비고(기타의견)</b>																																															
<b>회의일자</b>		<b>장소</b>																																													

※ 파란색으로 음영표시 된 작성요령(예시)은 참고 후 삭제요망

※ 항목별 분량은 조절 가능하나 전체 2장 이내로 요약 작성요망(편집가능)

※ 상기 서식은 참고용이며,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4.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제 20 - 호

# 위촉장

소속 : 0 0 0

직위 : 0 0 0

성명 : 0 0 0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주식회사 ○○○○의 사회적 성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 ○ ○

대표 홍길동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5. 교육결과보고서

## 교육결과보고서

<b>교육명</b>			
<b>일 자</b>	20 년 월 일	<b>강 사</b>	
<b>시 간</b>	<i>17:00 ~ 18:00 (1시간)</i>	<b>장 소</b>	
<b>참가자</b>	<i>홍길동, 000, 000, 000 외 10명</i>		
<b>주요 교육내용</b>			
<b>비 고</b>			
<i>교육진행 사진 또는 교육자료 사진 삽입</i>			

※ 교육시간 및 참석자 명단은 반드시 명시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부 서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4

## 업종별 측정기준표

---



[참고자료 1] 업종 분류기준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참조)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각 업종별 세부내용은 설명자료 참조(p60), 또한 복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 업종(매출액 40%이상)을 기준으로 실적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본) 설명자료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B. 광업
-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F. 건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H. 운수 및 창고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
- J. 정보통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L. 부동산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 교육 서비스업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U.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내용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내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참조
- 연결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A.농업, 임업 및 어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01.농업

#####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 활동을 포함한다.

##### 2)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실험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은 포함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 02.임업

#####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03.어업

####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2) 양식어업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를 양식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다.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 컨설팅업”에 분류한다.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바.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91231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 B. 광업

###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천연 생수 및 광천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은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360 수도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용지 개발 및 정지활동은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42121 토공사업”

## C.제 조 업

###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 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 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 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 공기의 생산·공급사업을 포함한다.

#### 가. 전기업

각종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 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 가스 또는 혼합 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 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정유공장에서의 석유 정제 가스 생산활동(192)

나. 차량용 가스 충전소 운영활동(47712)

다. 배관 이외의 방법(탱크로리 및 충전 상태 등)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매 4671, 소매 477)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보관시설 운영(5210)

마. 폐기물 소각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증기를 생산(38210)

바. 코크스로에서 부수적으로 미정제 가스를 제조(19101)

사. 산업용 압축·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제조(20121)

##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1. 개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나.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46)으로 분류한다.

다.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으로 분류한다.

라. 관개시설 운영활동(01411)



## F. 건설업

###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00)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681)

## G.도매 및 소매업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

## H.운수 및 창고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일정·경로·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관로(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 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 취급 및 화물 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 업체간에 화물의 수수 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을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

나. 자동차 유지 및 수리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며, 철도 역사, 항구, 비행장에서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분류한다.

다.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은 “4122 : 토목시설물 건설업”에 분류한다.

라.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761: 운송장비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마.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 I. 숙박 및 음식점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다.

#### 가. 숙박업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 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타산업과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철도 운수 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차 및 식당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6811)

## J.정보통신업

### 1. 개요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

#### 가. 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 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 간행물 등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수도 있다.

####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필름 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바. 정보 서비스업

정보 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뉴스 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거나 정기 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 “1811”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 “1820”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66121), 온라인 부동산 중개(68221), 온라인 인력 알선(75110) 등

## K.금융 및 보험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가.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 금융·신용 카드 및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 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나.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한다.

#### 다.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정부 이전 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의 소득 결손 및 손실 등을 보상하는 활동은 “84500 : 사회보장 행정”에 분류

나. 정부기관 및 사립 복지기관이 정부 이전 지출과 자선 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 복지사업은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분류

다. 운용 리스는 “76 : 임대업”에 분류

라.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L.부동산업

###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분류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 조사, 회사 본부, 경영 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 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 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건축 설계, 감리 등의 건축 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 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축산 동물 및 애완 동물 대상의 수의 서비스, 사진 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매니저업 및 물품 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등의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1. 개요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고용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법률 자문, 회계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활동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 “6821”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 “01122”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하여 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41226”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 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 가. 공공 행정 및 국방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산업 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 나. 사회보장 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 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 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



## P.교육 서비스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 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을 포함한다.

#### 마.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 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7291 : 직업 재활원 운영업”에 분류

나.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 내 고용활동”에 분류

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 직원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 가. 보건업

인간의 건강 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치과의사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 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 생산활동(27192)

나. 사회보장 행정 사무(84500)

다. 수의서비스 활동(7310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연극 제작설비 임대는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에 분류

나. 연예인 매니저업은 “73901 : 매니저업”에 분류

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은 “8561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분류

라.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는 “591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 대상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 나.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 관계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그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이 대분류에는 각종 가사 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을 포함한다.

## U. 국제 및 외국기관

이 대분류에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기타 외국 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지표 3)

(단위: %, 원)

업종 분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 값	취약계층 평균시급 중위 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70.0%	9,207
2	제조업(C)	66.1%	9,183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83.8%	12,326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51.5%	21,573
5	건설업(F)	57.6%	10,315
6	도매 및 소매업(G)	57.9%	10,170
7	운수업(H)	86.6%	10,740
8	숙박 및 음식점업(I)	66.4%	9,781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40.6%	10,381
10	금융 및 보험업(K)	8.3%	16,110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8.8%	11,50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1.7%	10,578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4.6%	10,064
14	교육 서비스업(P)	45.9%	10,196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5.1%	9,841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7.7%	9,359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6.7%	9,819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59.9%	9,783
-------------	--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자료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지표 6)

(단위: 천원)

업종 분류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재투자 평균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5,564
2	제조업(C)	10,709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6,373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6,260
5	건설업(F)	15,637
6	도매 및 소매업(G)	51,723
7	운수업(H)	222
8	숙박 및 음식점업(I)	8,354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8,266
10	금융 및 보험업(K)	9,906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34,13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7,07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329
14	교육 서비스업(P)	9,243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7,411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6,718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509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15,799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자료 4] 근로자 시급수준(지표 8)

(단위: 원)

업종 분류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9,056원 미만	9,056원 이상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9,781원 미만	9,781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9,315원
2	제조업(C)	9,051원 미만	9,051원 이상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765원 미만	10,765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9,810원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E)	11,732원 미만	11,732원 이상 20,040원 미만	20,040원 이상 25,483원 미만	25,483원 이상 32,415원 미만	32,415원 이상	22,935원
4	건설업(F)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357원 미만	10,357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932원
5	도매 및 소매업(G)	9,460원 미만	9,460원 이상 10,357원 미만	10,357원 이상 11,968원 미만	11,968원 이상 14,672원 미만	14,672원 이상	10,961원
6	운수업(H)	9,055원 미만	9,055원 이상 9,887원 미만	9,887원 이상 12,303원 미만	12,303원 이상 13,876원 미만	13,876원 이상	11,449원
7	숙박 및 음식점업(I)	9,091원 미만	9,091원 이상 9,856원 미만	9,856원 이상 10,639원 미만	10,639원 이상 12,555원 미만	12,555 원 이상	10,305원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9,087원 미만	9,087원 이상 9,965원 미만	9,965원 이상 11,426원 미만	11,426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590원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0,190원 미만	10,190원 이상 12,411원 미만	12,411원 이상 15,108원 미만	15,108원 이상 21,794원 미만	21,794원 이상	14,108원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9,231원 미만	9,231원 이상 10,644원 미만	10,644원 이상 11,356원 미만	11,356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788원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9,129원 미만	9,129원 이상 10,138원 미만	10,138원 이상 11,709원 미만	11,709원 이상 14,275원 미만	14,275원 이상	10,817원
12	교육 서비스업(P)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207원 미만	10,207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788원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051원 미만	9,051원 이상 9,614원 미만	9,614원 이상 10,414원 미만	10,414원 이상 11,891원 미만	11,891원 이상	9,926원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9,091원 미만	9,091원 이상 9,494원 미만	9,494원 이상 10,649원 미만	10,649원 이상 12,592원 미만	12,592원 이상	10,069원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9,056원 미만	9,056원 이상 9,638원 미만	9,638원 이상 10,483원 미만	10,483원 이상 11,855원 미만	11,855원 이상	9,958원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9,068원 미만	9,068원 이상 9,781원 미만	9,781원 이상 11,087원 미만	11,087원 이상 13,982원 미만	13,982원 이상	10,357원
-------------	--------------	------------------------	-------------------------	--------------------------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5] 고용 성과(지표 10)

(단위: 명)

업종 분류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3명 미만	3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8명 미만	8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6명
2	제조업(C)	5명 미만	5명 이상 8명 미만	8명 이상 14명 미만	14명 이상 25명 미만	25명 이상	10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9명 미만	9명 이상 28명 미만	28명 이상 34명 미만	34명 이상 42명 미만	42명 이상	31명
4	건설업(F)	4명 미만	4명 이상 5명 미만	5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9명 미만	9명 이상	5명
5	도매 및 소매업(G)	4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9명 미만	9명 이상 16명 미만	16명 이상	7명
6	운수업(H)	5명 미만	5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14명 미만	14명 이상 36명 미만	36명 이상	11명
7	숙박 및 음식점업(I)	4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8명 미만	8명 이상 14명 미만	14명 이상	7명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4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8명 미만	8명 이상 11명 미만	11명 이상	6명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4명 미만	4명 이상 7명 미만	7명 이상 11명 미만	11명 이상 22명 미만	22명 이상	8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7명 미만	7명 이상 12명 미만	12명 이상	7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6명 미만	6명 이상 11명 미만	11명 이상 21명 미만	21명 이상 52명 미만	52명 이상	15명
12	교육 서비스업(P)	3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5명 이상 7명 미만	7명 이상 14명 미만	14명 이상	6명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명 미만	9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42명 미만	42명 이상 90명 미만	90명 이상	33명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명 미만	3명 이상 4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6명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명 미만	6명 이상 9명 미만	9명 이상 11명 미만	11명 이상 27명 미만	27명 이상	10명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4명 미만	4명 이상 7명 미만	7명 이상 11명 미만	11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8명
-------------	-------	----------------	-----------------	------------------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6] 매출성과(지표 11)

(단위: 천원)

업종 분류	0%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중위값
	20% 미만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100%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02,231 미만	202,231 이상 289,937 미만	289,937 이상 432,387 미만	432,387 이상 1,452,503 미만	1,452,503 이상	343,938
2 제조업(C)	236,412 미만	236,412 이상 586,904 미만	586,904 이상 1,197,267 미만	1,197,267 이상 2,582,751 미만	2,582,751 이상	856,630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39,422 미만	639,422 이상 1,701,091 미만	1,701,091 이상 2,769,550 미만	2,769,550 이상 3,429,856 미만	3,429,856 이상	2,391,377
4 건설업(F)	320,498 미만	320,498 이상 497,110 미만	497,110 이상 721,227 미만	721,227 이상 1,243,546 미만	1,243,546 이상	635,945
5 도매 및 소매업(G)	196,172 미만	196,172 이상 431,524 미만	431,524 이상 937,952 미만	937,952 이상 2,349,973 미만	2,349,973 이상	656,912
6 운수업(H)	177,923 미만	177,923 이상 318,721 미만	318,721 이상 864,371 미만	864,371 이상 2,280,392 미만	2,280,392 이상	594,154
7 숙박 및 음식점업(I)	127,440 미만	127,440 이상 195,489 미만	195,489 이상 283,257 미만	283,257 이상 560,364 미만	560,364 이상	230,300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212,028 미만	212,028 이상 333,202 미만	333,202 이상 586,175 미만	586,175 이상 991,350 미만	991,350 이상	467,854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215,765 미만	215,765 이상 380,183 미만	380,183 이상 956,613 미만	956,613 이상 3,137,609 미만	3,137,609 이상	450,824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5,115 미만	145,115 이상 311,089 미만	311,089 이상 467,943 미만	467,943 이상 1,259,999 미만	1,259,999 이상	350,988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292,579 미만	292,579 이상 555,445 미만	555,445 이상 935,214 미만	935,214 이상 1,727,810 미만	1,727,810 이상	721,457
12 교육 서비스업(P)	112,554 미만	112,554 이상 197,623 미만	197,623 이상 335,530 미만	335,530 이상 760,238 미만	760,238 이상	253,458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55,342 미만	255,342 이상 554,560 미만	554,560 이상 1,054,011 미만	1,054,011 이상 2,078,171 미만	2,078,171 이상	775,280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08,884 미만	108,884 이상 196,561 미만	196,561 이상 320,196 미만	320,196 이상 594,033 미만	594,033 이상	242,643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21,516 미만	121,516 이상 283,600 미만	283,600 이상 396,019 미만	396,019 이상 926,383 미만	926,383 이상	338,236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189,822 미만	189,822 이상 377,500 미만	377,500 이상 768,407 미만	768,407 이상 1,733,292 미만	1,733,292 이상	539,069
-------------	---------------	--------------------------	--------------------------	----------------------------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7] 고용 성장률 및 매출액 성장률(지표 10, 11)

(단위: %)

업종 분류		고용성장률 중위값	매출액성장률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3.8%	2.7%
2	제조업(C)	0.1%	6.9%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2%	8.9%
4	건설업(F)	-3.2%	8.4%
5	도매 및 소매업(G)	0.2%	2.3%
6	운수업(H)	-3.6%	-6.2%
7	숙박 및 음식점업(I)	-1.0%	-0.3%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7.0%	18.0%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47.1%	6.2%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0.7%	18.2%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25.8%	-1.2%
12	교육 서비스업(P)	-1.0%	2.3%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6%	11.0%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0.2%	3.4%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4%	-1.0%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0.1%	5.4%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7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참고자료 8] 영업성과 (지표 12)

(단위: 천원)

업종 분류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34,222 미만	-34,222 이상 1,271 미만	1,271 이상 13,148 미만	13,148 이상 51,952 미만	51,952 이상	8,595
2	제조업(C)	-80,203 미만	-80,203 이상 -4,947 미만	-4,947 이상 19,304 미만	19,304 이상 86,449 미만	86,449 이상	4,282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6,210 미만	-16,210 이상 24,930 미만	24,930 이상 51,862 미만	51,862 이상 115,750 미만	115,750 이상	40,123
4	건설업(F)	-43,612 미만	-43,612 이상 -3,646 미만	-3,646 이상 15,432 미만	15,432 이상 57,823 미만	57,823 이상	9,167
5	도매 및 소매업(G)	-41,990 미만	-41,990 이상 -10,809 미만	-10,809 이상 9,438 미만	9,438 이상 58,592 미만	58,592 이상	768
6	운수업(H)	-162,481 미만	-162,481 이상 6,293 미만	6,293 이상 20,396 미만	20,396 이상 31,707 미만	31,707 이상	15,565
7	숙박 및 음식점업(I)	-41,577 미만	-41,577 이상 -14,354 미만	-14,354 이상 -673 미만	-673 이상 20,964 미만	20,964 이상	-6,103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58,856 미만	-58,856 이상 3,298 미만	3,298 이상 15,670 미만	15,670 이상 42,942 미만	42,942 이상	9,844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8,542 미만	-138,542 이상 -67,213 미만	-67,213 이상 -14,600 미만	-14,600 이상 622,139 미만	622,139 이상	-52,635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04,058 미만	-104,058 이상 -2,683 미만	-2,683 이상 17,983 미만	17,983 이상 83,282 미만	83,282 이상	9,334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47,008 미만	-47,008 이상 -13,065 미만	-13,065 이상 9,255 미만	9,255 이상 56,092 미만	56,092 이상	1,718
12	교육 서비스업(P)	-72,008 미만	-72,008 이상 -17,815 미만	-17,815 이상 1,646 미만	1,646 이상 17,199 미만	17,199 이상	-5,401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87,243 미만	-87,243 이상 -23,938 미만	-23,938 이상 2,489 미만	2,489 이상 22,060 미만	22,060 이상	-11,452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78,521 미만	-78,521 이상 -25,105 미만	-25,105 이상 -3,988 미만	-3,988 이상 12,769 미만	12,769 이상	-13,414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5,231 미만	-35,231 이상 -9,078 미만	-9,078 이상 9,124 미만	9,124 이상 48,148 미만	48,148 이상	5,379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60,697 미만	-60,697 이상 -11,987 미만	-11,987 이상 9,038 미만	9,038 이상 49,908 미만	49,908 이상	462
-------------	---------------	--------------------------	------------------------	-----------------------	--------------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9] 1인당 매출액(지표 13)

(단위: 천원)

업종 분류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33,662 미만	33,662 이상 48,336 미만	48,336 이상 70,242 미만	70,242 이상 171,737 미만	171,737 이상	54,004
2	제조업(C)	35,745 미만	35,745 이상 61,972 미만	61,972 이상 93,344 미만	93,344 이상 167,112 미만	167,112 이상	76,426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46,151 미만	46,151 이상 72,162 미만	72,162 이상 84,669 미만	84,669 이상 93,742 미만	93,742 이상	80,262
4	건설업(F)	60,906 미만	60,906 이상 97,403 미만	97,403 이상 132,385 미만	132,385 이상 205,231 미만	205,231 이상	111,085
5	도매 및 소매업(G)	37,100 미만	37,100 이상 64,924 미만	64,924 이상 117,465 미만	117,465 이상 212,964 미만	212,964 이상	91,718
6	운수업(H)	18,448 미만	18,448 이상 34,589 미만	34,589 이상 59,861 미만	59,861 이상 114,337 미만	114,337 이상	47,718
7	숙박 및 음식점업(I)	22,465 미만	22,465 이상 28,647 미만	28,647 이상 37,860 미만	37,860 이상 55,695 미만	55,695 이상	32,353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38,957 미만	38,957 이상 50,601 미만	50,601 이상 72,754 미만	72,754 이상 119,980 미만	119,980 이상	64,478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46,431 미만	46,431 이상 60,403 미만	60,403 이상 77,720 미만	77,720 이상 168,958 미만	168,958 이상	66,821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28,766 미만	28,766 이상 42,540 미만	42,540 이상 77,772 미만	77,772 이상 112,431 미만	112,431 이상	59,641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25,921 미만	25,921 이상 37,956 미만	37,956 이상 52,267 미만	52,267 이상 78,056 미만	78,056 이상	42,821
12	교육 서비스업(P)	19,533 미만	19,533 이상 34,590 미만	34,590 이상 47,448 미만	47,448 이상 84,242 미만	84,242 이상	39,496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5,955 미만	15,955 이상 19,229 미만	19,229 이상 25,960 미만	25,960 이상 45,157 미만	45,157 이상	22,405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2,660 미만	22,660 이상 36,500 미만	36,500 이상 59,474 미만	59,474 이상 90,895 미만	90,895 이상	48,536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7,833 미만	17,833 이상 27,998 미만	27,998 이상 38,586 미만	38,586 이상 64,685 미만	64,685 이상	33,947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25,704 미만	25,704 이상 44,795 미만	44,795 이상 71,985 미만	71,985 이상 127,237 미만	127,237 이상	56,140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